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자율 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8>

목 차

제1장 서론

1. 산업환경규제와 새로운 도전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의 문제점

1.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2.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규모와 양태
3.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
4. 현행 산업환경관리제도의 한계와 규제 개혁 과제

제3장 자율환경관리의 이론과 과제

1. 자율환경관리의 의의와 특성
2. 자율환경관리의 이론적 평가
3.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4. 자율환경관리의 운영 절차
5. 자율환경관리의 설계 조건

제4장 산업환경규제개혁과 자율환경관리의 국제동향

1. 일본
2. 미국
3. 유럽연합
4. 기타
5. 종합평가

제5장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영향과 자율환경관리 실태

1. 개별기업의 환경영양촉진제도
2.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목표를 제도
3. 사업자단체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4. 지역기반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5. 에너지 관련 자율환경관리 체계
6. 평가와 문제점

제6장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자율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모형과 추진 방법
3. 환경영양을 통한 자율환경관리 지원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2.2 XL 사업

XL사업은 최고(excellence)와 리더십(leadership)을 표방하고 더 훌륭하고 더 비용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식들을 시험하는(test) 데 목적을 두고 있다. Project XL을 통한 환경규제개혁의 접근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환경규제의 신축성(regulatory flexibility)을 도모하는 데 있다. Project XL은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실험으로 짜여진 시범사업계획(pilot program)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와 교훈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규제방식 개선에 활용된다.

개별 XL사업은 우수한 환경성적을 달성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며, 상식주도적 환경관리계획(common sense initiative)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의 보다 큰 책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전략개발에 역점을 둔다. 최종사업협정(Final Project Agreements (FPAs))은 Project 스폰서와 EPA간의 현장지향적(site-specific) 합의를 의미하는데 지역의 이해당사자와 환경관련 단체들도 FPAs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 XL사업 스폰서에는 ① 민간운영사업장(private facilities), ② 산업부문(industry sectors), ③ 연방정부사업장(Federal facilities), ④ 지역사회(communities) 등 4가지 형태가 있다.

Project XL의 개발과 추진집행은 대략 3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제안서(Proposal)의 제출이

다. 프로젝트 스폰서(예, 규제를 받는 기업, 공동스폰서조직 등)는 당해 주와 공동으로 제안서를 검토하게 된다. EPA에 프로젝트를 제출한다. EPA에 제출된 모든 Project들은 당해 주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는 최종사업협정의 개발(FPA Development)이다. 프로젝트 스폰서들은 EPA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와 공동으로 FPA를

개발한다. 또한 프로젝트 스폰서들은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종 이해당사자 집단들로 부터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찾는다.

셋째는 추진 및 평가(Implementation and Evaluation)이다. 프로젝트는 관련 사업장에서 집행 추진되며, 프로젝트 스폰서, 이해당사자, 규제기관 등에 의해 추진과정과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

XL사업 지원자는 반드시 충실한 규제이행 내역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XL사업제안서(proposal)는 ① 우수한 환경성과 도출, ② 비용의 절감과 관련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의 신속성 추구, ③ 이해 당사자들의 지지 획득, ④ 혁신적인 환경성과 달성과 오염예방, ⑤ 다른 사업장에 대한 파급영향, ⑥ 실현가능성, ⑦ 감독·보고·평가 방법의 제시, ⑧ 위험부담(risk) 전가 회피(Avoid shifting the risk burden) 등 8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들 기준 중 우수한 환경결과, 규제의 신속성,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우수한 환경결과 도출, 비용의 절감과 관련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의 신속성 추구,

〈표 4-11〉 미국의 Project XL 참가자 현황

기업/제품	협약내용
Berry사/음료	모든 허가(permits)를 대체하고, 허가준비와 관련된 비용제거를 위한 종합계획
HADCO/인쇄기	「자원의 보존과 복구법(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의 규정에 따른 폐수 슬러지 제거
Weyergaeuser/종이	정부의 일상적인 생산공정변경에 대한 감시·감독 면제와 보고요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염배출, 용수사용, 고품폐기물 발생 저감화
Merck/의약품	정부의 일상적인 생산공정변경에 대한 감시·감독 면제를 위한 오염물질 전과징 한도기준(lifetime caps)
Osi/화학	EPA의 새로운 유기오염배출 규제에 따른 오염방지 수단 강구
Intel사/반도체	대기·수질·폐기물을 위한 광역시설운영계획 도입, 정부의 일상적인 생산공정변경에 대한 감시·감독 면제와 연방정부의 요건하에서의 오염배출 한도기준 도입
Vandenburg 공군기지	대기오염배출허가 검토(air permitting review)의 면제. 군사시설은 배출규제를 상향조정하고 갱신하기 위해 compliance savings를 이용

자료 : 미국 EPA.

이해당사자들의 지지 획득 등이 특히 강조된다.

XL사업에 참여하면 참여사업자는 EPA 규제준수에 있어서 신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사업장이 '훌륭한 이행자(good actor)'로 인근주민과 규제자에게 비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 인센티브도 갖게 된다. Project XL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비용과 시간절약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지역사회가 갖게 될 잇점으로는 우수한 환경성과, 지역사회 연대의식 강화, 긍정적인 대민관계(positive public relations) 등이 있을 수 있다.

2.3 환경친화적 설계

2.3.1 환경친화적 설계의 의미

환경친화적 설계(Design for Environment : DFE)는 미국 환경보호처 오염예방 및 유해물질국(Office of Pollution Prevention and Toxics)이 1992년 오염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자율환경관리 프로그램이다.¹⁸⁾ 이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생산공정 그리고 기술 및 관리체계의 설계나 재설계시에 환경적인 배려를 하도

18) <http://www.epa.gov/dfe/>. 19) <http://www.epa.gov/dfe/about.htm>.

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산업계, 대학, 연구소, 공익집단, 그리고 여타 정부기관과 자발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¹⁹⁾

전형적인 환경친화적 설계의 산업체 사업은 청정기술대안 평가(A Cleaner Technologies Substitutes Assessment(CTSA))와 통신 및 집행전략이다. 청정기술대안평가사업은 전통적인 방법과 기술 그리고 대안적인 방법과 기술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실행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안평가에서 입증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설계프로그램은 사실안 내서, 잡지, 오염방지사례연구, 소프트웨어, 비디오, 훈련 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2.3.2 참여산업과 기능

과제참여자의 행위에는 일반적인 기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넓은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특정산업에 있어서 업계와 노동조합과의 공동사업도 포괄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개발된 정보는 기업경영자, 산업설계 기술자, 물질전문가와 구매자 등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확산은 전통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적인 배려가 포괄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리하여 동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공정을 모든 이해관련자가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친화적 설계에 있어서는 환경 및 인간건강 위해도, 전통적 또는 대안적 기술, 공정, 물질의 비용 등을 평가한다. 환경친화적 설계는 실적과 상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서 노동자나 환경에 대한 위해도를 저감시키는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산업체와 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는 Printed Wiring Board, Screen Printing, Lithography, Flexography, 의류·직물(Garment and Textile Care), 도금(Metal Finishing) 등이다.

2.4 책임배려제²⁰⁾

2.4.1 책임배려제의 배경과 의의

미국화학제조업자협회(Che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CMA)는 화학산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8년에 책임배려(Responsible Care)제를 도입했다. 캐나다화학제조업자협회가 최초로 개발한 자율협약프로그램과 유사한 책임배려제는 미국의 산업분야에 있어서 최초의 자기규제(self-regulation) 프로그램이다. 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CMA는 책임배려제 참가자들이 책임배려마크(Responsible Care Mar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화학산업의 생산량기준으로 86%인 40여개국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책임배려제는 미국 화학산업의 생존이 화학공장들의 관리실태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달려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즉 이 프로그램의 주된 정책적 배경은 미국 화학산업에 대한 공공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개선하는데 있다. CMA가 개발한 책임배려제는 미국 화학산업의 규모·제품·공정의 이질성, 생산제품의 다양성, 규모의 거대성, 경쟁력 확보 등과 같은 미국내 화학산업의 제반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수립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환경관리서약(unilateral commitments)의 하나인 책임배려제의 목표는 환경성과 기준보다는 관리실무(management practices)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목표는 10대 지도원칙의 채택과 6대 관리실무 규정의 추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관리실무규정의 범위는 오염예방에서 제품스튜어드십에 까지 걸쳐져 있다. 책임배려제는 화학제품의 생애주기 즉 생산·이용·재활용·처리를 다루는 106개 관리실무를 포괄하고 있다.

책임배려제가 도입된 이래 CMA는 회원사를 초월하여 참가를 확대해 왔다. 1997년에 CMA는 예방위주의 환경관리를 고취하기 위해 미국종합유기 화학제조업자협회(SOCMA)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책임배려제는 계량적인 오염저감요구치나 저감계획추진표표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단지 CMA의 참가 기업에 대한 주된 성과기준은 기업들이 6개 관리 실무 규정을 추진했느냐의 여부이다. CMA는 기업들이 추진과정을 매년 스스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MA는 1993년에 책임배려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체계검증제도(management system verification)를 개발하였다. 이는 공식적인 환경감사제도는 아니며, 참가기업들이 관리실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2.4.2 책임배려제의 법적성

격과 제재

책임배려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사협정(gentleman agre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배려제의 비공식적인 협약과 조건내용은 최대한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산업부문의 자기규제 환경관리 프로그램은 의사결정 및 집행 수단 간섭의 형태로 독점금지법(anti-trust legislation)에 의해 방해를 받아 왔다.

이러한 독점 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해 CMA는 회원사들의 차별적이거나 독점적인 행위의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개발했다. 즉 회원기업들이 특정 관리전략, 행위, 성과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시행을 자제했으며,

〈표 4-12〉 10대 지도원칙(Ten Guiding Principles)

- 화학제품 생산과 공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에 적극 대응한다.
- 안전하게 제조·운반·사용·처리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개발·생산한다.
- 모든 기존 및 신규 제품과 공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건강, 안전 및 환경적 고려를 최우선시 한다.
- 화학관련 건강, 환경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무원, 종업원, 고객, 시민들에게 즉각 보고하고 이에 대한 예방수단을 권장한다.
-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운반·처리에 관해 고객들과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 종업원과 시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장과 시설물을 운영한다.
- 제품·공정·폐기물의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과 지원을 통해 관련 제반 지식을 넓혀 간다.
- 과거의 유해물질 운반·처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문과 협력해 나간다.
- 지역사회, 근로현장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법, 규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화학제품을 생산·사용·운반·처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Responsible Care의 지도원칙과 관리실무를 발전시켜 나간다.

〈표 4-13〉 6대 관리실무규정(Six management practice codes)

- 지역사회 의식과 비상대응: 비상대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일관리를 보장한다.
- 오염예방: 폐기물과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보호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
- 안전한 생산공정도모: 화재, 폭발, 우발적 오염누출 사고를 예방한다.
- 운반: 화학제품의 수송 및 저장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객, 사업자, 종업원, 환경으로 부터 멀어 주도록 한다.
- 종업원 건강 및 안전: 종업원, 기업체방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나간다.
- 제품스투어드십: 제조에서 부터 운반·판매·최종처리에 이르기까지 화학제품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해 나간다.

가능한 한 책임배려제 프로그램의 애매모호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CMA 회원사들은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에 보고한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 및 운반현황을 매년 협회(Trade Association)에 보고하여야 한다.

CMA는 회원사들이 책임배려제의 지도원칙을 채택하고, 관리실무 규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신, 교육, 현지제도 등의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회원사들에게 프로그램 추진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게시판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비회원사들에게도 유용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책임배려제의 참여는 정부등 감독기관의 요구에 의하기

20) Janice Mazurek(1998), "The Use of Unilateral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The Responsible Care Initiative," OECD / OCDE ENV / EPOC / GEEI(98)25.

보다는 주로 동종기업들의 무언의 압력 즉 윤리적인 의무감(ethical obligation)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만약에 책임배려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전혀 없지만 자사 기업의 명예실추 등 기업내 심적인 비용과 부담은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평가과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원사들은 CMA로 부터 제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최후의 수단이다.

CMA는 1990년에 관리실무규정의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다단계정책(multi-stage policy)을 개발했다. CMA는 위반업체에 대해 초기의 통지문부터 시작해서 최후 공식검토(official review)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엄중한 통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이때 CMA는 각 단계마다 규정이행을 끝까지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기업이 요구하는 지원을 계속 제공한다.

2.4.3 책임배려제의 이행과 평가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의 자기규제 환경관리방식은 산업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가 집단 선(collective good)이기 때문에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를 수반한다. 그러나 CMA는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를 성공적으로 최소화해 왔다. CMA는 미국내 화학산업의 경제적 생존력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점을 회원사에게 확신시켜 집단행위(collective action) 문제를 최소화했다. 협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CMA는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책임배려제를 작성하였다. 즉 정부에 의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의 화학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매우 이질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참가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es)은 여전히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CMA는 책임배려제의 이행과정을 주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는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투명성의 결여는 환경론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공공기관과 환경론자들의 신뢰성의 결여이다. 이러한 신뢰성의 결여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이다. 따라서 CMA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체계검증제도(MSV)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CMA는 환경효과성(environmental effectiveness),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예, 가격)(wider economic effects), 경쟁력 확보(comparativeness implications), 동적 효과(dynamic effects), 연성효과(예, 신용, 협력)(soft effects), 생존력(viability) 등 8가지 기준을 통해 책임배려제를 평가하고 있다.

2.5 에너지관련 자율관리협약

미국은 산업부문의 다양한 에너지관련 자율협약체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시행중인 자율협약은 참여기업들을 위해 실현가능한 오염예방 및 에너지효율기술과 응용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촉진한다. 이러한 자율협약은 기본적으로 ① 정부는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채널을 수립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성과(BAU)의 범위를 넘어서 움직이도록 하는 국가 성과목표를 수립한다. ③ 자율협약은 기업이 사회의 목표와 부합하고 실현가능한 성과목표를 도입하도록 촉진한다. ④ 자율협약은 기업들이 그들의 활동에 대한 편익과 성과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조성한다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자율실천 정책과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Green Lights, Climate Wise, Motor Challenge, VAIP,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Program, Industries of the Future(IOF) Program 등이 있다.

▶ Green Lights는 참여기업들이 사무실이나 산업시설을 위한 조명 시스템을 비용효과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들은 경제적 에너지효율성을 갖는 조명시스템 개선을 5년내에

평가·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에 EPA와 함께 서명하면서 협약이 발효된다. 경제적 에너지효율성에서 경제적이란 20% 이상의 비용절감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1994년 기준으로 Green Lights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14개에 이른다.

▶ Climate Wise는 EPA와 DOE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참여기업들이 GHG 배출저감을 위한 활동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들은 성과달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론 기술, 재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아 그들이 이행하기로 협약한 공정변화, 연료대체, 새로운 생산설계 등을 이행·추진해 나간다. 이행결과는 1605b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한다. 현재 3개의 철강기업들이 이러한 Climate Wise 자율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 Motor Challenge는 참여범위가 매우 넓은데 DOE, 산업계, 모터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공동으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주된 목적은 효율적인 전기모터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해 가는 데 있다. 참여자들은 Motor Challenge 목표 프로그램에 DOE와 함께 서명하면서 협약이 발효된다. Motor Challenge 목표에는 효율적인 모터이용 증대, 새로운 모터 시스템의 개발, 효율적인 모터 시장확대를 위한 기존 시장기반의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PA의 VAIP는 알루미늄산업부문을 PFCs의 자율저감 프로그램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자율협약(voluntary commitments)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수집 및 조치 프로그램이다.

▶ Industries of the Future(IOF) Program은 DOE가 7개 산업부문과 공동으로 미래시장과 연구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연구의제를 개발·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첫번째 단계는 산업 부문에 의해서 제시된 안을 이슈화하는 것이며, 두번째 단계는 이슈화된 쟁점을 기초로 DOE와 산업부문 대표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에 의해 기술개발 지침과 연구추진계획이 개발되게 된다.

다양한 미국의 자율협약 프로그램에서 산업 참가자들로 부터 발견되는 협약과 목표의 내용 대부분은 미국 기후변화실천계획(CCAP)의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의 자율협약은 참가자들이 협약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의 특정 성과목표는 개별 참가자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Climate Wise의 참가자들은 VAIP의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이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목표의 범위도 VAIP와 같이 동종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경우도 있고, Green Lights와 같이 특정 파트너별로 국한되는 좁은 경우 등 다양하다.

기업의 Green Light와 VAIP에의 참가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양해각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전형적인 인증 등 더이상의 참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Climate Wise의 경우는 참가규정을 Climate Wise 파트너십협약 실천계획에 두고 있다. 그리고 IOF의 경우는 산업계대표, 기업 CEOs와 에너지부간의 협정에 의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의 참가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 양해각서든 협정이든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

목표달성기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VAIP의 달성기간은 2000년인데 개별 사업장이나 기업의 목표기간은 특정 업체의 양해각서에 따라 다양하다. Green Lights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도 참여자의 경제에 따라 목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년에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은 1605b자율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GHG 저감을 위한 성과추진 자율보고 제도를 수립했다. 이 제도에 의해 관련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배출저감 결과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장려받는다. Green Lights와 VAIP는 별도의 보고활동을 갖고 있다.